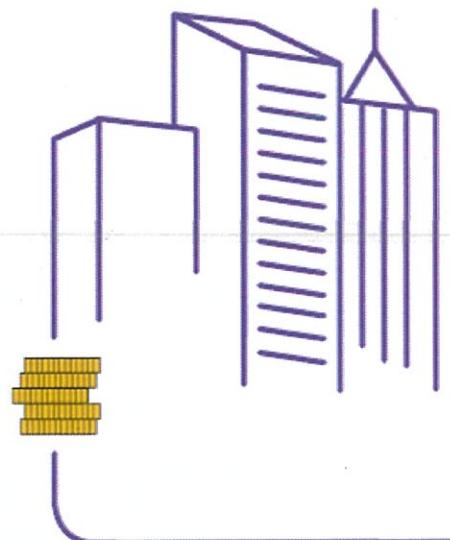


+

지방보조금 제도 및 부정수급 신고 안내

공정한 지역사회,
책임감 있는
지방재정 운용의 첫걸음,

**지방보조금의
올바른 사용입니다!**



+



지방보조금법 들여다보기

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및 처벌강화



- ▶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(법 제12조)
- ▶ 지방보조금 반환 · 환수 명령 (법 제31조 · 제34조)
- ▶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(법 제33조)
- ▶ 제재부가금(최대 5배) 부과 및 가산금 징수 (법 제35조)
- ▶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(법 제32조)
- ▶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(법 제30조)
- ▶ 반환금 · 제재부가금 등 미납 시 강제징수 (법 제36조)

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 검증 및 회계감사 의무

(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8조 관련)



①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

- ▶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: 실적보고서와 함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을 받아서 제출

②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

- ▶ 같은 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: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감사보고서 제출

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등

(지방보조금법 제21조 및 제22조 등 관련)



①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

- ▶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, 양도, 교환 또는 대여, 담보의 제공 금지

※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교부 목적과 내용연수를 고려한 “처분 제한 기간” 확인

② 부동산의 부기등기

- ▶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사실과 중요재산 처분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부기 등기를 의무화

③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

- ▶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‘중요재산 현황’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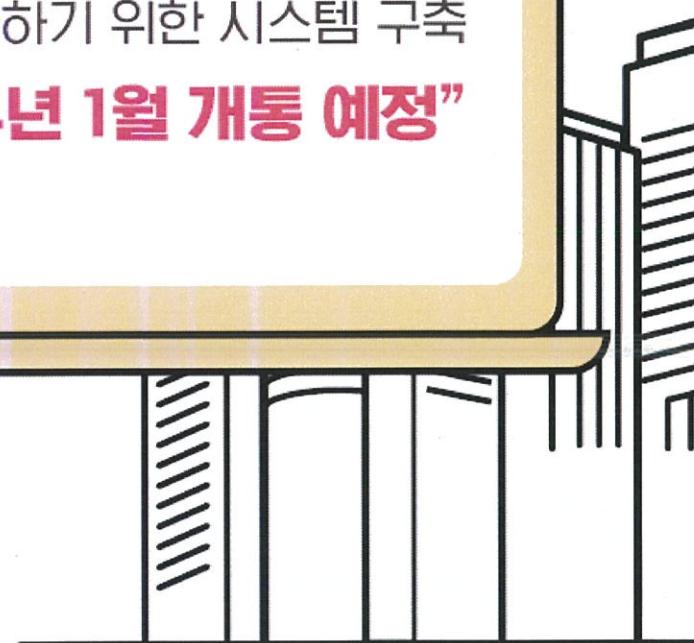
※ 처분 제한 기한까지 반기별로 변동현황 보고



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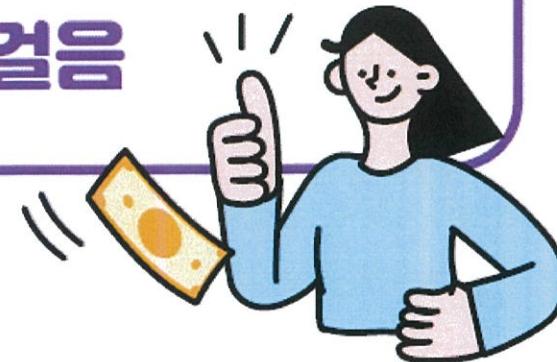
보조사업자 공모 및 교부·정산·반납 등
지방보조금 흐름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
자동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

“2024년 1월 개통 예정”



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투명한 지방재정의 첫걸음

신고대상



- ▶ 지방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▶ 법령 · 조례 · 교부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
- ▶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등

예1)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매매, 임대, 담보 제공한 경우

예2) 허위 견적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 · 편취한 경우

예3)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

신고방법



- ▶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
: 방문, 홈페이지, 우편, 전화, 팩스 등
- ▶ 국민권익위원회 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센터

**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
110 또는 1398**



신고 및 포상금에 관한
기타 자세한 사항은
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
또는 **감사부서**로 문의
하시기 바랍니다.

투명하고 올바른 지방보조금
운영을 통해
주민의 소중한 세금이
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
**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
나가겠습니다.**



행정안전부